

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

1. (사무영업·운전직렬) 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2(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)에 따름
2. (차량·토목·건축·전기통신직렬) 한국철도공사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따름

구분	『한국철도공사 채용신체검사』 판정기준
일반결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• 고혈압성 응급증
비강(鼻腔)·구강·인후기관 계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·구강·인후·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
흉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
심장·혈관 및 순환기 계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
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
생식비뇨기 계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
내분비 계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
혈액 또는 조혈 계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
신경 계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뇌졸중(腦卒中)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•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• 만성 진행성·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(腦脊髓炎) [유전성 무도병(舞蹈病: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), 근위축성 측색경화증, 소뇌성운동실조증(小腦性運動失調症)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] •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뇌종양 및 척수종양 나. 외상성 신경질환 다. 말초신경질환 라. 전신성의 신경근(神經筋) 접합부 질환 마.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바. 뇌전증(腦電症)(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)
팔다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(어깨·팔·손) 장애 •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
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
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, 시야 장애,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
정신 계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•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

* 신체검사는 의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의료진의 판정결과에 따르므로 신체검사 세부시행 방법에 관해서는 병·의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